

입법정책브리핑

Legislation & Policy Briefing

제2021-4호

발행일 : 2021. 12. 17. (금)

제391회 국회(정기회, 2021. 9. 1. ~ 12. 9.)

법무법인(유) 지평 공공정책팀은 (사)지평법정책연구소와 함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률안의 정책적 배경과 관련 법정정책 자료를 전달하는 입법정책브리핑을 발간합니다. 입법정책브리핑은 입법과 정책을 통합적 관점에서 고찰함으로써 법이 현실에서 살아 움직이고 정책이 헌법과 법치주의에 기반하여 구현되는 데에 기여하는 기초자료가 될 것입니다.

목 차

1. 개관
2. 주요 법정정책 이슈
 - 가. 중소기업 창업 지원
 - 나. 저출산 · 고령사회 대응
 - 다. 석탄 · 원전 정책

※ 별도의 인용표기가 없는 인용문과 그림 및 도표의 출처는 링크된 원문의 것입니다.

법무법인(유) 지평 뉴스레터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고객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할 목적으로 제공되고 있으며, 이에 수록된 내용은 법무법인(유) 지평의 공식적인 견해나 구체적인 사안에 관한 법적 효력을 지닌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법무법인(유) 지평의 변호사 및 전문가와 상담하여 주십시오.

1. 개관

제391회 국회(정기회)는 9월 1일부터 시작되어 지난 12월 9일을 끝으로 100일간의 일정을 마쳤습니다. 12월에는 2일 74건의 법률안이 통과된 데 이어 9일에 107건 법률안이 통과되었고, 그만큼 많은 법정책적으로 주목할 만한 이슈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번호에서는 12월 2일 본회의 통과 법률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9일 본회의는 곧이어 발간될 차호에서 다룰 예정입니다.

12월 2일 본회의를 통과한 주요 법안으로는 (1) 1세대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을 상향 조정하여 부담을 완화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 가업상속공제 대상이 되는 중견기업의 기준을 확대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 (3) 영아기 아동에게 지급하는 이른바 ‘영아수당’을 신설하는 한편, 아동수당 수급 연령을 만 8세까지로 확대하는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4) ‘첫만남이용권’의 안정적인 지급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5) 소규모 사립유치원도 급식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받도록 교육청 등에 영양교사를 두고, 재난 상황에서 학생들의 가정에서 식재료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 (6) 보호대상아동의 의사에 따라 보호조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7) 새로운 창업환경을 반영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전부개정법률안, 기존 학자금대출자의 부담 완화를 위한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이 있습니다. (8) 한편 청소년의 전자기기 과의존 예방을 위한 학교 보건교육을 실시토록 하는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본지 지난호에서 다룬 ‘강제적 설탕유제 폐지’ 이슈와 연계된 입법이라 볼 수 있습니다([입법정책브리핑 제2021-3호](#) 참조).

이번 국회(정기회)의 12월 2일 본회의에서 통과된 74건의 법률안 목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회를 통과한 법률안은 정부로 이송되어 공포 후 시행됩니다.

	소관 상임위원회(건)	의안명	제안자
1	교육위원회(7)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병욱 의원 등 11인
2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찬대 의원 등 10인
3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교육위원장
4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교육위원장
5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교육위원장
6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교육위원장

	소관 상임위원회(건)	의안명	제안자
7	교육위원회(7)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교육위원장
8	문화체육관광 위원회(1)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문화체육관광 위원장
9	기획재정위원회(1)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태영호 의원 등 10인
10	외교통일위원회(3)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주 의원 등 16인
11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태영호 의원 등 10인
12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외교통일위원장
13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승래 의원 등 14인
14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위원회(12)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필모 의원 등 12인
15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정식 의원 등 10인
16		뇌연구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석준 의원 등 11인
17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빈 의원 등 13인
18		생명공학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승래 의원 등 15인
19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정식 의원 등 10인
20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대안)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위원장
21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부개정법률안(대안)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위원장
22		생활주변방사선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준호 의원 등 15인
23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은아 의원 등 12인
24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준호 의원 등 14인

	소관 상임위원회(건)	의안명	제안자
25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5)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운하 의원 등 10인
26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 위원장
27		석탄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 위원장
28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 위원장
29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 위원장
30	보건복지위원회(29)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성 의원 등 10인
31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영호 의원 등 20인
32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민정 의원 등 11인
33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34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주 의원 등 19인
35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재근 의원 등 11인
36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종성 의원 등 10인
37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허종식 의원 등 12인
38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재근 의원 등 10인
39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보건복지위원장
40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보건복지위원장

	소관 상임위원회(건)	의안명	제안자	
41	보건복지위원회(29)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보건복지위원장	
42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보건복지위원장	
43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보건복지위원장	
44		노후준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보건복지위원장	
45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보건복지위원장	
46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보건복지위원장	
47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보건복지위원장	
48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보건복지위원장	
49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보건복지위원장	
50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보건복지위원장	
51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보건복지위원장	
52		저출산 · 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보건복지위원장	
53		혈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보건복지위원장	
54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기윤 의원 등 10인	
55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보건복지위원장	
56		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종식 의원 등 13인	
57		병원체자원의 수집 ·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현영 의원 등 13인	
58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보건복지위원장	
59		기획재정위원회	교통 · 에너지 · 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기획재정위원장
60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기획재정위원장
61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기획재정위원장
62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기획재정위원장

	소관 상임위원회(건)	의안명	제안자	
63	기획재정위원회(16)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기획재정위원장	
64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기획재정위원장	
6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기획재정위원장	
6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기획재정위원장	
6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기획재정위원장	
68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기획재정위원장	
69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기획재정위원장	
70		기획재정위원회(16)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71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7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73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74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환 의원 등 18인	

이번 호에서는 여러 중요한 법안 가운데 법정책적으로 의미 있는 것으로 중소기업 창업 지원,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석탄·원전 정책 이슈를 다룹니다.

2. 주요 법정책 이슈

가. 중소기업 창업 지원

개요

창업은 일자리 창출과 미래의 기회를 열어가는 혁신경제의 출발점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코로나 확산 속에서도 전 세계 창업기업들은 혁신 제품, 기술, 서비스를 신속하게 개발하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사회경제적 변화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도 그간의 창업정책과 민간의 혁신노력에 따라 최근 제2벤처 붐이 도래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창업지원 예산은 2016년 대비 2.5배 증가하였고, 혁신 창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정책역량이 집중되어 왔습니다.

12월 2일 본회의에서는 중소기업 창업 지원과 관련하여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전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었습니다. 1986년 제정된 이래로 아직 반영되지 못한 경제·사회·교육 전반의 구조적 변화를 이번 개정을 통해 받아들임으로써 중소기업 창업 지원 정책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입법 동향

	소관 상임위원회	의안명과 주요 내용	의결일자 (본회의 결과)
1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 위원회	<p>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p> <p>제조업 중심으로 운용되는 현행법이 최근의 추세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디지털화·비대면화에 따른 향후 산업의 발전적 방향을 현행법에 반영하여 창업기업이 새로운 창업환경에 맞춰 기술기반의 신사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 미래 지향적인 형태로 현행법을 재편할 필요가 있음.</p> <p>[주요 내용]</p> <p>목적규정에 ‘창업국가 건설’ 명시, 정의규정에 ‘신산업·기술 창업’ 등 신설(제1조~제6조), 창업정책 수립 및 추진체계 규정 강화 신설(제7조~제15조), 창업저변 확대 및 환경개선 규정 신설 확대(제16조~제24조), 신산업 및 기술 창업 촉진, 지역기반 창업지원 규정 신설(제25조~제33조), 창업기업의 성장 촉진 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및 강화(제34조~제41조), 실패기업의 재기를 위한 재창업지원 강화(제42조~제44조), 창업기업의 공장 설립절차 특례규정 정비(제45조~제50조), 창업지원 기반 구축의 근거 규정 이관 및 확대(안 제51조~제55조), 보칙 및 벌칙 사항 정비(제56조~제66조)</p>	2021-12-2 (수정가결)

정책 동향

[100대 국정과제] 39 혁신을 응원하는 창업국가 조성(중기부)

과제목표

기업투자촉진법(가칭) 제정 및 선진국 수준으로 벤처펀드 확대
우수 기술인력의 혁신창업을 활성화하고 재도전 걸림돌 제거

주요 내용

(투자 중심 창업생태계 조성) 기업투자촉진법(가칭) 제정, 엔젤투자 활성화 및 펀드조성 확대 등을 통해 '22년 신규 벤처펀드 5조원 돌파

- M&A 규제 완화, 세제특례 등 제도 개선으로 원활한 회수환경 조성

(혁신창업 활성화) '22년까지 기술창업자 5.6만명 육성 및 성장단계별 정책자금 확충으로 기술인력 혁신창업 촉진

(창업기업 성장 촉진) '18년에 창업기업 부담금 면제범위 확대, 공공 조달 의무구매제도 도입, 벤처기업 확인제도 개편 등 추진

(재도전 인프라 확충) '17년에 정책금융 연대보증 면제대상 확대(창업 7년 이내) 및 사업 실패자의 소액 체납세금 한시적 면제, '18년 정책금융 부실채권 채무조정 범위 확대 등 실패 부담 완화
- 성실실패 재창업자를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 사업화, 자금 등 패키지 지원 확대
(’22년까지 5.5천명)

중소기업 육성 종합계획(2020년~2022년)

비전

글로벌 혁신기업 육성을 통해 세계를 선도하는 디지털강국 구현

전략

중소·벤처·소상공인의 디지털화를 통한 새로운 경쟁력 확보 및 경영안정 지원체계 구축

정책방향

(코로나19 위기극복 대응) ① 소상공인 생업유지·경영안정 지원 및 재기 안전망 확충

② 소상공인 영업부담 경감 및 위기 중소기업 지원체계 강화

(중소·벤처·소상공인 디지털화 촉진) ① 비대면·디지털·그린 등 유망 벤처·스타트업 육성

② 창업벤처 활성화를 위한 혁신 플랫폼 및 제도 확충

③ AI·데이터 기반 제조혁신 등 중소제조업 디지털 전환

④ 스마트상점·디지털 전통 시장·디지털 상권 육성

(전통 중소기업·소상공인 맞춤형 지원 강화) ① 전통 중소기업의 제조공정 및 R&D혁신

② 소상공인·전통시장 판로 지원 및 상권 활성화를 통한 매출 증대

③ Brand K 등을 통한 해외 진출 촉진 및 인력 지원 강화

④ 「자상한 기업」 등 상생협력 확산 및 불공정거래 근절 도모

관련: [중소기업 육성 종합계획 - 글로벌 혁신기업 육성을 통한 디지털강국 구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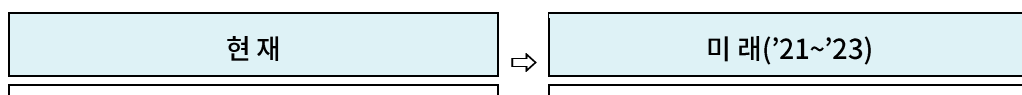
대한민국정부 2020. 9.

중소기업 창업지원계획(2021~2023년)

비전

디지털 대전환을 선도하는 세계 최고 혁신 창업국가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술창업기업: 연간 22.9만개 ▶신산업 창업지원: 예산의 20% ▶기업가정신순위: 세계 9위 ▶창업생존율(5년): 3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술창업기업: 연간 28만개 ▶신산업 창업지원: 예산의 40% ▶기업가정신순위: 세계 4위 ▶창업생존율(5년): 40%
--	--

전략

(혁신·신산업분야 창업 활성화) 혁신·신산업분야 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지원체계 개편 / 혁신경제 선도 위한 3대 유망분야 혁신 스타트업 육성 / 혁신분야 스타트업 맞춤형 정책수단 연계 지원

(협력과 상생 기반 혁신창업 육성) 민간과 정부가 함께 협력하여 유망 스타트업 발굴·육성 / 스타트업 주도의 상생 기반 성장 및 글로벌화 촉진 / 부처간 협력을 통해 분야별 스타트업 특화 지원

(지역기반 건강한 창업생태계 조성)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지역 창업의 중심 거점으로 개편 / 대학의 청년창업 환경 개선 및 역할 강화 /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혁신 창업 생태계 조성

(교류 및 기술창업 저변 확대) 스타트업 교류·협력 강화를 통한 창업 붐 확산 / 기업가정신 확산 및 미래 창업인재 양성

(창업정책 총괄·관리 강화) 범 정부 창업지원사업 지원체계 정립 및 'K-스타트업' 고도화 / 스타트업 중심의 창업사업 통합관리 및 거버넌스 확립

(창업 친화적 제도 기반 마련) 스타트업의 성장을 가로막는 현장규제 개선체계 구축 / 마음껏 창업에 도전하는 창업친화적 제도 및 환경 조성

관련: [중소기업 창업지원계획\(2021~2023년\)](#) 중소벤처기업부 2021. 8. 4.

참고 자료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전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0. 11.
정태호 의원안: 혁신적 창업기업 육성을 위한 전부개정

[청·장년의 창업 지원에 관한 법률안 검토보고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0. 7.
노웅래 의원안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0. 7.
한무경 의원안: 청년의 해외 창업 지원 근거 마련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0. 7.
박수영 의원안: 제조업 창업자에 대한 부담금 면제기간 확대, 제조업 창업자에 대한 면제 부담금 확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0. 9.

장경태 의원안: 창업교육 대상에 청년 추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0. 9.

서일준 의원안: 청년창업자 제품에 대한 공공기관 구매 의무 부여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0. 11.

김상훈 의원안: 제조 창업기업에 대한 부담금 면제기간 확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1. 2.

김경만 의원안: 재창업 지원사업 제도 개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1. 9.

장경태 의원안: 청년창업자 우대 특례 신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1. 6.

신영대 의원안: 여성 및 장애인 창업자 창업촉진사업 우대

[스타트업 생태계 관점에서 바라본 신생기업 생존의 영향요인: OECD 국가 비교 분석](#)

중소벤처기업연구원 「KOSI 중소기업 포커스」 2021. 12. 6.

스타트업은 본질적으로 ‘신생기업의 한계’로 인해 생존과 성장에 대한 어려움에 직면하며, 이들의 생존에 대한 영향요인을 인식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정책역량을 집중하는 것이 필요 (...) 기회적 창업, 국제화는 신생기업의 생존을 위한 주요한 결합요인이며, 신생기업의 비즈니스 환경에서 기회적 창업과 국제화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 (...) 우리나라의 경우 스타트업 투자, 신기술의 활용이 활발하며 경쟁의 정도가 높은 국가로 분석되었으며, 신생기업의 생존율을 향상시키기 위해 국제화 정도를 높이기 위한 정책적인 노력이 필요 (...) 스타트업 투자는 결합하는 상황적 조건에 따라 상이한 역할을 수행 (...) 신생기업의 경쟁 환경에 대한 중요성 인식 필요 (...) 스타트업 생태계 관점에서 신생기업 생존에 대한 영향요인을 더욱 깊이 있게 이해하기 위해서 향후 거시적 경제상황 변화 등 반영이 필요하며, 신생기업의 성장 경로(투자라운드), 좀비기업화 여부 등에 대해 고려하는 것이 필요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한국개발연구원 2021년 조세특례 심층평가 2021. 9. 1.

정부가 조세지원의 특성을 고려한 적정 방식으로 인지율과 제도 사용비율을 높일 수 있다면 보다 많은 기업에 당초 목적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 정부가 중소기업의 창업과 성장 지원을 위해 필요한 금융지원, 기술지원 등의 정책조합을 마련하고, 본 제도가 그 중 하나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 조세특례는 정부의 경제정책(중소기업 육성)을 효율적으로 작동하기 위해 시행되는 것으로, 제도의 목적에 적합한 객관적인 기준을 일관되게 적용함으로써 감면대상 업종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 중소기업의 창업과 이들의 생존은 경제활성화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그러나 국내에서 창업중소기업의 상당 수가 채 10년을 버티지 못하고 폐업하고 있어 적절한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의 ‘혁신 생태계’를 ‘혁신’하자](#) 재단법인 여시재 2021. 5. 27.

문제는 자명하다. 중소기업의 혁신역량을 제고하여야 한다. 현재의 대기업 편중의 혁신으로는 새로운 산업이 빠른 속도로 태어나고 성장하는 4차 산업혁명기의 변화에 대응할 수도, 더 나아가 주도할 수도 없다. 특히 벤처를

포함한 스타트업 기업이 산업계의 혁신을 주도할 여건을 마련해 주어야 할 것이다. (...) 엔젤투자시장을 활성화 하기 위해 엔젤투자자에 대한 보다 과감한 세제혜택이 이루어져야 한다. (...) 또한 대기업 지주회사의 여유자금이 신산업 발굴과 투자에 지원되도록 CVC(Corporate Venture Capital) 제도의 제한 없는 도입으로 대기업 편중의 혁신이 중소/벤처기업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다. 이 밖에도 기업 역량 부문에서 우수인력, 아이디어 및 기술/시장에 대한 정보 부족이 혁신 저해요소로 조사되었다.

[벤처·창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향](#)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영향분석보고서」 2017. 12. 1.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첫째, 창업 관련 법령의 단순화·체계화를 통해 창업지원 법률·제도의 정합성을 제고함과 동시에 민간투자를 활성화할 수 있는 입법이 필요하다. 둘째, 각 부처에 흩어져 있는 창업정책을 총괄조정할 수 있는 기구를 구성하여 정책의 효율성을 제고해야 한다. 셋째, 신기술·신산업 분야에 대한 선제적 규제완화로 질 좋은 창업을 유도하고 4차 산업혁명시대에 능동적으로 대비하여야 한다. 넷째, 정부 재정지원 중심의 창업활성화 방식을 각종 행정절차의 철폐, 창업공간의 확대 등을 통하여 민간 주도의 창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환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기관별로 난립되어 생산 중인 창업관련 통계를 국가승인통계화 하여 근거 기반의 창업정책 수립과 관리·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해야 할 것이다.

[중소벤처기업 법제연구\(1\) - 혁신창업 활성화를 위한 중소기업 자금공급 확대방안 연구 -](#)

한국법제연구원 2018. 10. 31.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자금조달 방법의 확대 필요성은 해외 주요국에서 활용되고 있는 제도에 관한 도입방안 검토에서 시작되었으며, 대표적인 방법으로 차등의결권제도와 SAFE, CN을 검토하였다. (...) 중소기업에 투자하는 투자자의 경우 주주가 갖게 되는 의결권을 통한 경영참여 보다는 투자의 경제적 수익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경우가 다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전체 기업에 대한 도입이 아닌 벤처기업이나 앞서 개념을 설정한 혁신창업 기업을 대상으로 제도를 도입한다면 결국 시장에서 해당 기업의 가치를 판단한 투자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 그러나 차등의결권제도, SAFE, CN을 벤처기업법이나 중소기업창업법에 도입하는 경우 상법이나 자본시장법과의 정합성 문제는 계속 제기될 수 있을 것이다.

나.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개요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 가운데 고령화가 가장 빠르게 진행 중입니다. 1983년부터 저출산 현상이 지속되어온 가운데, 2017년에는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전체인구의 14% 이상을 차지하는 고령사회에 진입했습니다. 나아가 향후 3~4년 내에는 위 인구가 20% 이상을 차지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은 2005년부터 국가 의제로 설정되어, 같은 해 설치된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 위원회의 활동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2일 통과된 법률안 중에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그리고 노인의 삶의 질 개선과 양육부담을 감소를 위한 여러 법률안이 통과되어 정책을 뒷받침하게 되었습니다.

입법 동향

	소관 상임위원회	의안명과 주요 내용	의결일자 (본회의 결과)
1	보건복지위원회	<p>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성 의원 등 10인)</p> <p>노인학대 신고의무 대상에 사회복지관, 부랑인 및 노숙인보호를 위한 시설에서 복무하는 사회복지요원을 추가하려는 것임. 다만, 사회복지요원은 복무제도 중 하나로 우리나라의 경우 개인 의사와 무관하게 병역의무를 부과하는 의무병제를 실시하고 있으므로 신고의무자가 그 의무를 다하지 않을 때 부과하는 과태료 대상에서 사회복지요원은 제외하도록 하여 신고에 대한 공익성 확보 및 신고자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안 제39조의6제2항제5호 및 제61조의2제2항제2호 단서 신설).</p>	2021-12-2 (수정가결)
2	보건복지위원회	<p>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 의원 등 10인)</p> <p>노인복지관도 시설·인력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 사전연명의료 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노인세대의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 및 등록을 위한 접근성을 높이고, 연명의료결정제도를 비롯한 웰다잉 제도의 정착 및 확대에 이바지하고자 함(안 제11조제1항제5호 신설).</p>	2021-12-2 (원안가결)
3	보건복지위원회	<p>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p> <p>노령연금의 지급연기 신청 횟수 제한을 폐지함(안 제62조제1항). 유족연금 수급권자 소재불명의 경우 현행법의 유족 신청에 따른 절차를 그대로 두되, 소재불명을 신고할 유족이 없는 등 필요한 경우 직권으로 급여를 지급 정지할 수 있도록 하고, 그에 따른 지급 정지 취소 및 미지급 급여 지급을 규정함(안 제76조제9항·제10항 신설 등). 수급권자(유족연금 수급권자 제외)가 1년 이상 소재불명인 경우에 대한 급여의 지급 정지, 지급 정지의 취소, 미지급 급여의 지급을 규정함(안 제86조의2 신설).</p>	2021-12-2 (수정가결)
4	보건복지위원회	<p>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p> <p>장기요양보험 가입자의 보험료 과부담 인식을 해소하기 위하여 장기요양보험료율의 부과표준을 ‘건강보험료’에서 ‘소득’으로 변경하고, 장기요양급여에 대한 본인부담금을 차등 규정할 수 있도록 하여 합리적인 장기요양급여 이용을 유도함.</p> <p>또한, 의료기관에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의사소견서·방문간호지시서를 발급하여 그 발급비용을 받은 경우 부당이득에 대해 징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며, 장기요양기관에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의무적으로 설치·운영하도록 하여 수급자의 안전과 장기요양기관의 보안을 강화하고자 함.</p>	2021-12-2 (수정가결)

5	보건복지위원회	<p>노후준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p> <p>노후준비 종합정보시스템의 통합적인 운영을 위하여 주택담보 노후연금보증, 농지담보 노후생활안정자금, 공무원연금·군인연금 등 직역연금 정보도 노후준비 종합정보시스템에서 조회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관련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려는 것임. 또한 광역노후준비 지원센터를 시·도지사가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을 정비하면서 광역 및 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운영하도록 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노후준비 전달체계에 참여하도록 하려는 것임.</p>	2021-12-2 (수정가결)
6	보건복지위원회	<p>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p> <p>산후조리원의 설치·운영 주체에 광역 지방자치단체를 추가하여 광역 지방자치단체도 명확한 법적 근거에 따라 산후조리원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p> <p>원활한 산후조리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및 관계 기관·법인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p> <p>산후조리도우미의 자격요건을 강화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고 있는 산후조리도우미의 자격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규정하고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수료하도록 의무화하며 산후조리도우미로 활동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하여 명시함.</p> <p>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에 모자보건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규정하여 모성·영유아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도록 함.</p> <p>남성을 포함하여 영유아를 동반한 다양한 사람이 수유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p>	2021-12-2 (수정가결)
7	보건복지위원회	<p>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p> <p>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의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양육방식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2022년 1월 1일부터 출생하는 만 2세 미만의 아동에게는 매월 최고 50만원의 아동수당을 추가로 지급하되, 보육료 이용권 및 아이돌봄 이용권으로도 수령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5항 및 제10조제4항).</p> <p>가정의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보다 많은 아동이 기본적인 권리와 복지를 누릴 수 있도록, 아동수당 지급대상을 8세 미만 아동으로 규정(안 제4조제1항, 제5조제1항·제2항, 제7조제5항 및 제10조제1항).</p>	2021-12-2 (수정가결)
8	보건복지위원회	<p>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p> <p>저출산·고령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업에 대하여 심층적인 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저출산·고령사회 정책과 관련된 교육 및 홍보 등을 수행하는 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의 제도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임.</p>	2021-12-2 (수정가결)

		<p>또한,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따라 출산가정의 초기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아동양육에 대한 사회·국가책임을 강화하여 저출산 완화에 기여하기 위해, 출생 아동당 200만원의 첫만남이용권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p>	
--	--	--	--

정책 동향

[4대 복합·혁신과제] 교육·노동·복지 체계 혁신으로 인구절벽 해소

과제개요

- ▶ 초저출산 현상 지속에 따라 향후 5년은 인구절벽위기 극복을 위한 마지막 기회로서 전 사회적 총력 대응 필요
- ▶ 초저출산 탈피 및 출생아 수 45만명(출산율 1.4) 회복, 자녀 양육·교육의 국가책임시스템 구현, 일·가정 양립 일상화 등

주요 내용

- ① 자녀 출생·양육·교육의 국가책임시스템 구현
 - ▶ 출생에 대한 사회적 책임 확립
 - ▶ 아동·가족에 대한 사회적 지지 및 투자 강화
 - ▶ 공공성 높은 온종일 돌봄 실현
- ② 결혼·출산을 꿈꿀 수 있는 성평등 사회로의 전환(Hi-Five, 5대 개혁 어젠더)
 - ▶ 안정된 청년 일자리 확대
 - ▶ 주거 공공성 강화
 - ▶ 일·가정 양립 일상화
 - ▶ 성평등 문화 정착
 - ▶ 자녀와 부모 모두 행복한 교육
- ③ 전 사회적 총력대응체제 강화
 - ▶ 대통령 주도 상시 운영체제 전환 등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컨트롤타워 실질화, 사회적 합의를 위한 소통의 장 확대
 - ▶ 과감한 저출산 대책 추진을 위한 자원 확충 노력, 국가 인구연구기관 등 신설 (예: 프랑스 국립인구문제연구소)
 - ▶ 인구감소지역 저출산 극복 노력 유도를 위한 지원방안·제도 등 마련



포용국가 사회정책 추진계획

혁신적 포용국가의 개념

‘혁신적 포용국가’는 사회정책과 경제정책의 유기적 연계를 통해 국민의 삶의 질 개선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모색하는 국가발전전략

기본방향

- ① 국민 전 생애 기본생활보장을 위한 정책 목표 구체화
- ②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 ③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국정운영 지도
- ④ 국민의 달라지는 삶을 체감도 있게 제시

주요내용

① 삶 영역

- ▶ 돌봄: 영·유아부터 초등학교까지 / 장애인 / 한부모, 미혼모, 다문화가족 등 다양한 가족
- ▶ 배움: 중도에 포기 없도록 / 4차 산업혁명 시대 혁신인재 / 모든 성인이 필요한 역량을 개발
- ▶ 일: 일과 육아를 남녀가 함께, 여성 경력단절 예방 / 실질소득 높이기 위한 정책 확대
차별받지 않고 능력을 펼칠 수 있는 일터 / 국민의 안전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좋은 일자리
- ▶ 심: 과도한 노동시간을 줄이고 문화와 여가가 있는 생활 / 가까이에서 문화와 여가를 즐기는 환경
- ▶ 노후: 탄탄한 준비로 인생 2막 지원 / 안정적인 노후 지원

② 생활 기반

- ▶ 소득: 고용안전망에서 배제된 국민들의 안정적 소득 보장 / 누구나 기본생활 가능한 사회안전망
- ▶ 환경·안전: 국민 건강 지키기 위한 더 쾌적한 환경 조성 /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 /
여성과 아동에 대한 폭력없는 안전한 사회를 구축
- ▶ 건강: 병원비 걱정 없이 좋은 의료서비스
- ▶ 주거·지역: 신혼부부와 서민이 집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주거복지 환경 / 다양한 돌봄·교육·건강 등 생활서비스

관련 : [문재인 정부 포용국가 사회정책 추진계획](#) 관계부처 합동 2019. 3. 7.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21~2025)

비전

모든 세대가 함께 행복한 지속 가능 사회

목표

개인의 삶의 질 향상
성평등하고 공정한 사회
인구변화 대응 사회 혁신

추진전략

1.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 조성

- ① 모두가 누리는 워라밸 ② 성평등하게 일할 수 있는 사회 ③ 아동돌봄의 사회적 책임 강화
- ④ 아동기본권의 보편적 보장 ⑤ 생애 전반 성·재생산권 보장

2. 건강하고 능동적인 고령사회 구축

- ① 소득공백 없는 노후생활보장체계 ② 예방적 보건·의료서비스 확충
- ③ 지역사회 계속 거주를 위한 통합적 돌봄 ④ 고령친화적 주거환경 조성 ⑤ 존엄한 삶의 마무리 지원

3. 모두의 역량이 고루 발휘되는 사회

- ① 미래 역량을 갖춘 창의적 인재 육성 ② 평생교육 및 직업훈련 강화 ③ 청년기 삶의 기반 강화
- ④ 여성의 경력유지 및 성장기반 강화 ⑤ 신중년의 품격있고 활기찬 일·사회 참여

4.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적응

- ① 다양한 가족의 제도적 수용 ② 연령통합적 사회 준비 ③ 전 국민 사회안전망 강화
- ④ 지역상생 기반 구축 ⑤ 고령친화사회로의 도약

관련 :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2021 - 2025](#)

대한민국정부 2020. 12. 22.

참고 자료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2021. 4.

서영석 의원안: 첫만남 이용권 지급 근거 마련

김희곤 의원안: 임신·출산·양육 비용 지원예산 통계관리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2020. 11.

정준숙 의원안: 저출산·고령화사회위원회 위원 구성 변경 등

남인순 의원안: 저출산·고령화사회정책의 영향 분석·평가 실시, 교육 및 홍보 기관·단체 지원 근거 마련

양금희 의원안: “저출산” 용어를 “저출생”으로 변경

강훈식 의원안: 다자녀가구의 정의 신설 및 지원 근거 마련 등, 기업의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참여 협력 및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년 및 신혼부부를 위한 시책 강구

[서정숙 의원,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정책토론회 개최](#)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 블로그 2021. 11. 11.

1차 토론 : 인구정책의 새로운 대안 모색

[대통령 8개 위원회 공동 토론회: 인구감소, 초고령사회, 지방소멸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주관) / 정책기획위원회 / 일자리위원회 / 4차산업혁명위원회 / 자치분권위원회 / 국가균형발전위원회 / 국가교육회의 /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2021. 9. 30.

(기조강연) 인구변화와 대응

(세션 1) 미래 인적 역량 강화

디지털 전환과 비대면 미래사회 대응 국가 인재 양성 방향 / 인재양성을 위한 생애주기별 교육정책과 사회정책

의 혁신과제 / 4차산업혁명의 인재 육성을 위한 에듀테크 활성화 방향과 정책과제

(세션 2) 지역소멸 위기 대응

지방소멸 위기와 대응 전략 / 국가위기 대응을 위한 지방소멸 방지, 어떻게 할 것인가 / 인구감소시대, 농촌 공간
재생과 미래 혁신 주체 육성

- 관련 : [인구감소, 초고령사회, 지방소멸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유튜브 채널 2021. 9. 30.

[포용적 가족정책 관련 공청회 자료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저출산·고령화대책특위(20대) 2017. 2. 23.

(진술자료) 한국가족의 중층적 변화와 가족정책: 포용적 가족정책의 방향과 과제

(진술자료)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포용적 가족정책

(진술자료) 비혼, 동거가구에 대한 사회적 차별 해소 및 인식개선

(진술자료) 포용적 가족정책 추진 성과 및 향후 계획

['21년 장래인구추계\('20~'70년\) 분석](#) 기획재정부 2021. 12. 9.

총인구 (현황) 총인구 감소시점은 '21년으로 '19년 장래인구특별추계(이하 '19년 추계')에서 전망한 '29년보다
8년 빨라짐 (...) (시사점) 코로나19의 단기 충격이 총인구 변화 추이에 영향 미쳤으나 중장기적으로 기존 전망
수준을 회복할 것으로 예상 (...) 생산연령인구 (현황) 생산연령인구는 향후 5년간 177만명 감소할 것으로 전망
되고, '19년 추계(151만명) 대비 감소인원은 26만명 이상 증가 (...) (시사점) 향후 5년여간 생산연령인구 감소
세가 커진 상황에서 생산인구에 대한 대응책 마련이 시급 (...) 저출산 (현황) 코로나19 영향으로 향후 3~4년간
출산율·출생아수 하락이 예상되지만, 이후 반등해 '19년 추계 수준까지 회복 전망 (...) (시사점) 코로나19 충격
에서 벗어나 조기에 출산율 반등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적극적인 출산·육아 지원정책 필요 (...) 고령화 고령화
관련 지표는 코로나19 등 단기충격이 미치는 영향이 적어 '19년 추계와 추세적 차이는 없을 것으로 전망

[제4차 저출산 고령사회기본계획의 젠더적 의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젠더리뷰」 2021. 3. 31.

이와 같이 전체적으로 제4차 기본계획은 제3차 기본계획 수정판의 기본적인 구조를 승계하면서, 부분적인 한계
는 있지만 청년여성들의 감수성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은 저출산 자체를 문제시하는 한계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저출산'이 문제가 되는 것은
본질적으로 국가의 관점이며, 개인의 관점에서는 '저출산'이 아니라 원하는 '생애전망'대로 살기 어려운 것이 문
제일 뿐이다. 저출산 자체를 문제시하는 정책의 구조는 재정당국을 설득할 프레임 도구로써 유용성을 지니지만,
정책당사자에게 지지받기 위한 정책프레임으로는 설득력이 부족하다. (...) 저출산 자체를 목표로 하는 동아시
아의 정책폭증이 대부분 성공적이지 않았던 경험에 비추어, 정책 당사자들로부터 지지를 이끌어낼 수 있는 정책
프레임과 구조에 대한 본질적인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 도래한 것으로 판단된다.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국민 인식 및 가치관 심층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 12.

조사 결과 우리 사회는 연령에 대한 전통적 인식과 가치가 강력히 유지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연령규범에 대한
고정관념과 세대 간 갈등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연령을 기준으로 하는 다양한 연령규범 중 노동시장과 가
족 발달과업에 따른 연령규범, 연령에 대한 고정관념이 강하며, 연령으로 인한 사회에서의 차별 또한 높게 나타
났다. 그러나 점차 평균수명 및 중위 연령이 증가하며 연령대별 인구 구성비가 달라지는 미래 인구변화에 유연하
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노동시장뿐 아니라 우리 사회 전반에서 연령에 의해 개인의 선택에 제약이
이루어지지 않는 '연령 유연성'을 높이고, 다양한 연령의 사람들이 어울릴 수 있는 '연령 다양성'이 이루어지도록
하여 연령통합적 사회로 도달하기 위한 준비를 필요로 할 것이다.

저출산·고령화 시대의 이주민 유입과 사회통합 한국개발연구원 2020. 3. 30.

저출산·고령화의 지속으로 인해 국내 인력 수급은 한동안 어려움을 전망이고, 이로 인해 이주민의 유입과 사회 통합은 그 중요성이 더해질 것으로 본다. (...) 이주의 형태가 점차 다양화되고, 더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이주민들이 사회구성원이 될 것은 예상 가능한 전망이다. (...) 한국의 제3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의 정책 과제 중 하나는 ‘인권과 다양성이 존중되는 정의로운 사회’이다. 이는 이주민과 선주민의 사회 통합이 인권, 다양성, 정의의 세 가지 측면에서 다변화되는 한국 사회 발전의 주요 축임을 시사한다. 이러한 관점에 기반하여 앞으로의 이민 정책은 증가하는 외국인의 단순 관리를 벗어나 적극적인 사회통합을 이끌어 나갈 필요가 있다.

OECD 통계에서 나타난 한국 노인의 삶과 시사점 국회입법조사처 「국제통계 동향과 분석」 2019. 12. 12.

한국 노인은 생계비 마련을 주목적으로 비정규직 저임금 일자리에 근무하면서 가장 오랜 기간 경제활동에 참여. (...) 아동, 청소년, 성인의 소득빈곤율에 비해 노인의 소득빈곤율만 현저히 높다. (...) 주관적 건강상태는 OECD 회원국 중 30위로 낮은 편임. 또한 다른 연령집단들보다 65세 이상 노인의 사회적 고립도가 높은 상황임. OECD 회원국의 노인자살률 (...) 65세 이상 모든 연령층에서 한국이 현저히 높은 1위. (...) 80세 이상 초고령노인의 빈곤과 사회적 고립에 대한 범정부적 관심과 대책이 필요할 것임. 양질의 지속가능한 고령자용 일자리가 마련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의 개선이 필요할 것임. (...) 노인에 대한 다차원적인 지원수준을 높일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다. 석탄·원전 정책

개요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계기로 우리 사회에서도 에너지전환이 강조되었으며, 이번 정권에서 본격적으로 정책에 반영되었습니다. 한국적 맥락에서 탈석탄과 탈원전 이슈는 미세먼지 저감이나 후쿠시마 원전 사고와 그에 이은 경주·포항 지진에 따른 사회적 분위기에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들 모두 최근에는 기후위기와 관련한 에너지 이슈로서의 성격도 강합니다. 세계적으로도 COP26에서 저감장치 없는 석탄발전소의 단계적 감축 및 비효율적 화석연료 보조금의 단계적 폐지에 대한 합의가 있었습니다. 원전에 대해서도 주요국에서는 건설 중단 및 폐쇄 기조가 계속되고 있는 한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오히려 가동을 계속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습니다.

12월 2일 본회의에서는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원전 안전과 관련된 여러 법안과, 석탄의 품질유지를 위한 「석탄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어 정책에 부응하고 있습니다.

입법 동향

소관 상임위원회	의안명과 주요 내용	의결일자 (본회의 결과)
----------	------------	------------------

1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위원회	<p><u>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한준호 의원 등 15인)</u></p> <p>원자력안전위원회가 감시기를 설치·운영할 때 유의물질 검출 및 분석을 위하여 필요한 부지를 함께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감시기에서 유의물질이 검출된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시행하는 방사능 농도 및 종류 등에 대한 조사·분석을 거부·회피하거나 방해한 자에 대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유의물질 검출 및 분석 업무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제1항 후단 및 제31조제3항제8호의2 신설 등).</p>	2021-12-2 (원안가결)
2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위원회	<p><u>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허은아 의원 등 12인)</u></p> <p>대통령령으로 위임되어 있는 조사위원회의 구성에 대한 내용을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도록 하고, 조사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하여는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보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안 제43조제2항 및 제3항, 제43조의2 신설 등).</p>	2021-12-2 (원안가결)
3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위원회	<p><u>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한준호 의원 등 14인)</u></p> <p>현행법에 명시된 부적합사항 보고 조항에 안전관련설비 및 사고관리계획서상의 사고관리설비로 인하여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안전성에 중대한 영향이 있거나, 환경상 위해가 발생한 경우 즉시 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15조의3 및 제92조제3항 신설).</p>	2021-12-2 (수정가결)
4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 위원회	<p><u>석탄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u></p> <p>석탄 및 석탄가공제품의 최고판매가격 지정과 그에 따른 가격안정지원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함.</p> <p>또한 석탄광업자가 판매하는 석탄은 품질검사의 대상이 되나 석탄광업자 외의 자가 판매하는 석탄은 품질검사의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석탄가공업자가 석탄가공제품의 원료로 사용하는 석탄광업자 외의 자로부터 공급받은 석탄에 대하여도 품질기준을 유지하도록 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등이 석탄 및 석탄가공제품의 품질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장부 등의 제출을 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현실에 맞지 않는 과징금 상한액 상향,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권한의 한국광해광업공단 위탁 근거 등을 규정함으로써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p>	2021-12-2 (수정가결)

정책 동향

[100대 국정과제] 58 미세먼지 걱정 없는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 (환경부)

60 탈원전 정책으로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로
전환 (산업부·원안위)

과제목표

미세먼지 발생량을 임기 내 30% 감축하고 민감 계층 적극 보호

주요 내용

(원인규명 및 예보정확도 제고) 환경위성 발사('20년), 측정망 확충, 한중 공동 연구('17년5월 ~ '20년) 등을 통해 미세먼지 발생원인 규명

- '20년까지 도심 측정소 대폭 확충 및 고농도 시 예보정확도 74% 달성

(발전·산업부문 감축) 석탄발전 축소, 사업장 배출규제 강화

- '17년부터 봄철 노후 석탄발전소(8기) 일시 가동중단 및 신규 건설 불허

- '18년 사업장 먼지총량제 시행 및 배출허용기준 20% 이상 강화

- 임기 내('22년) 30년 이상된 노후 화력발전소(10기) 전면 폐쇄

(경유차 단계적 감축) 경유차 비중 축소 및 친환경차 비중 확대

-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확대(서울→수도권), 조기폐차 사업 확대 등 경유차 비중 축소

- '18년 저공해 건설기계 사용 의무화 및 디젤기관차 배출기준 강화

- '22년까지 전기차 등 친환경차 보급 획기적 확대

(민감계층 등 보호 강화) 오염우심지역 특별관리, 노인·어린이 맞춤형 대책 추진

- '19년 배출원이 밀집한 충청·동남·광양만권 특별관리지역 지정

(한중·동북아 협력) 한중 정상회담 의제화 및 동북아 다자협약 추진

- '19년까지 한중 협력의지를 담은 미세먼지 공동선언문 발표

과제목표

탈원전 로드맵 수립을 통해 단계적으로 원전제로 시대로 이행

에너지가격체계의 합리적 개편 및 분산형 전원 보급 확대

주요 내용

(탈원전 로드맵 수립) 원전 신규 건설계획(추가 6기) 백지화, 노후 원전 수명 연장 금지 등 단계적 원전 감축계획을 전력수급 기본계획 등에 반영

- 공론화를 통해 사용후핵연료정책을 재검토하고, 고리1호기 영구정지를 원전해체 산업을 육성하는 계기로 활용

(원자력 안전규제 강화) 원안위 위상 및 독립성 강화와 안전관리체제를 정비하고 원전의 내진 설계기준 상향 조정 검토

- 원안위를 대통령 직속으로 변경하고 위원 구성의 다양성·대표성 확보

(에너지가격체계 개편) 사회적 비용을 반영해 발전용 연료 세율체계를 조정하고, 산업용 전기요금체계 개편을 통해 전력 다소비형 산업구조 개선

(분산형 전원 확대) 분산형 전원(신재생, 집단에너지, 자가발전)의 인허가, 연료 구매, 요금 설정 등 전 과정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강화

- 원전 및 석탄의 지속적 축소를 통해 LNG를 포함한 분산전원의 활용 확대

관련 : [정부, 신고리 5. 6호기 건설재개 방침과 에너지전환\(탈원전\) 로드맵 확정](#)

산업통상자원부 2017. 10. 24.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비전

에너지 전환을 통한 지속가능한 성장과 국민 삶의 질 제고

중점 추진과제

- ① 에너지정책 패러다임을 소비구조 혁신 중심으로 전환
 - 소비효율 38% 개선('17년 대비), 수요 18.6% 감축('40, BAU 대비)
 - 부문별 수요관리 강화, 수요관리 시장 활성화
- ②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믹스로 전환
 - 원전은 점진적으로 감축하고 석탄은 과감하게 감축
 - 재생에너지 발전비중 30~35%('40)로 확대
 - 미세먼지를 저감하고 2030 온실가스 감축로드맵 이행
- ③ 분산형 · 참여형 에너지 시스템 확대
 - 분산형 전원 확대, 계통체계 정비
 - 전력 프로슈머 확대, 지자체 역할·책임 강화
- ④ 에너지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 재생에너지, 수소, 효율연계 산업 등 미래 에너지산업 육성
 - 전통에너지산업 고부가가치화, 원전산업 핵심생태계 유지
- ⑤ 에너지전환을 위한 기반 확충
 - 전력·가스·열 시장제도 개선
 - 에너지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관련 : [제3차 에너지 기본계획](#) 산업통상자원부 2019. 6. 4.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17~2031\)](#) 산업통상자원부 2017. 12. 29.



산업 · 에너지 탄소중립 대전환 비전과 전략

비전

저탄소 경제를 선도하는 세계 4대 산업강국 (제조업 르네상스 2.0)

목표

구분	18년	50년(Net-zero)
① 재생에너지 전원 비중	3.6%	70.8% (약 20배 ↑)
② 청정수소 자급률	0%	60%
③ 친환경·고부가 품목 비중	16.5%	84.1% (약 5배 ↑)

④ 제조업 탄소집약도	496톤CO ₂ eq/십억원	➔	68톤CO ₂ eq/십억원 (86%↓)
⑤ 대한민국 수출 순위	6위(20년 7위)	➔	4강 안착

5대 전략

(청정에너지 전환 가속화) 50년 석탄발전 중단 실현 / 재생e 70% 목표 → 인허가혁신 등 / 환경급전 확대 등 전력시장 개편 / 민·관 94조원 탄소중립 투자 추진

(산업구조 저탄소 전환) 산업R&D 탄소중립 중심 재편 / 세제 + 35조 정책금융 등 전폭지원 / 대형프로젝트 투자 인센티브 검토 / 탄소중립 규제혁신 TF 운영

(탄소중립 기회 신산업 육성) 3대 분야 등 新성장동력화 추진

- 친환경 인프라: 수소·모빌리티·재생e 등
- 저탄소소부장: 바이오·배터리·반도체 등
- 그린엔지니어링: 플랜트·CCUS·신서비스 등

(함께 도약하는 공정한 전환) (중소) 공정·경영혁신 범부처 지원 / (전통) 에너지전환지원법 제정 등 / (지역) 정의로운 전환 특구 신설탄소중립 상생형일자리 등

(탄소중립 전환 거버넌스 확립) 「탄소중립 산업전환 특별법」 제정 / 유연 정책보완 체계 구축

관련: [산업·에너지 탄소중립 대전환 비전과 전략](#) 산업통상자원부 2021. 12. 10.

참고 자료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1. 4.
한준호 의원안: 감시기 설치·운영시 유의물질 검색부지 확보 근거 신설 등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방재 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1. 6.

허은아 의원안: 방사능재난조사위원회의 구성 근거 신설 등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1. 4.
한준호 의원안: 부적합사항 보고 대상에 사고관리설비 포함 등

[석탄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1. 2.
이성만 의원안: 과징금 상향 등

[전력수급 위기와 탈원전, 무엇이 팩트인가? 자료집](#) 에너지전환포럼 / 그린피스 2021. 8. 2.
(발제 1) 전력수급현황과 전망, 재생에너지의 전력피크 기여도
(발제2) 미래 전력망 과제와 원전의 문제

탈석탄 시대, 전력시장의 개선방향 자료집

국회의원 이소영 / 기후솔루션 / 충남대학교 미래전력망디자인 연구실 2021. 4. 21.

(발제 1) 현행 전력시스템과 석탄발전의 경제성

(발제 2) 탄소세 도입 및 전력시장 개선 방향

2050년, 석탄발전 중단...신재생에너지 비중 70% 아이뉴스 24 2021. 12. 10.

2050년 석탄발전이 중단되고 탄소배출의 70% 이상을 산업·에너지계에서 줄여 탄소중립을 실현하기로 했다. 2050년 재생에너지 비중을 70%로 확대한다. 정부는 10일 청와대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탄소중립 선도기업 초청 전략보고회’를 개최했다. 2034년까지 노후 석탄발전 24기 폐지, 민간발전까지 석탄발전 상한제 적용 확대 등을 통해 2050년 석탄발전 중단 목표를 달성하기로 했다. 2030년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은 30.2%에 이르고 2050년에는 70% 달성을 목표로 잡았다.

원전의 운명, 22일 결판 난다 조선일보 2021. 12. 9.

지난달 30일 프랑스 파리 북부 지역에서 열린 민간 분야 원자력 기업·기관들의 최대 행사 ‘세계원자력박람회(WNE)’ 개막식 연설에서 카드리 심슨 EU 에너지담당 집행위원은 “EU 집행위원회(유럽연합의 행정부)는 앞으로 몇 주 안에 원전이 투자자를 위한 지속가능 활동으로 분류될 수 있는지 분명히 할 것”이라는 말로 결정이 임박했음을 알렸다. (...) 탄소 중립을 주도하고 있는 EU가 원전을 친환경 에너지로 규정할 경우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폭발 사고 이후 탈(脫)원전 압박에 시달려온 글로벌 원전 산업 입장에서선 그야말로 부활의 신호탄이다.

제26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의 주요 논의 동향과 시사점

국회입법조사처 「이슈와 논점」 2021. 11. 23.

우리나라는 상향된 2030 국가감축계획(NDC) 및 2050 탄소중립계획이 파리협정체계와 연동하여 이행될 수 있도록 탄소정책을 점검하고, 국제탄소시장 활용전략을 체계적으로 마련해야 할 것이다. 탈화석연료·친환경차로의 전환이라는 국제동향에 발맞추기 위해 화석연료보조금 개선·친환경차 전환 촉진 등의 논의도 해 나가야 할 것이다. (...) 우리정부의 탈석탄선언 참여가 국내외에 석탄화력 종식 시기에 대한 혼동을 유발한 것, 연료비 상승을 이유로 한전·한수원이 탈원전정책에 반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 유가상승으로 인한 유류세 인하가 탄소중립정책과 부합하는지에 대한 논의 등 (...) 앞으로 「탄소중립기본법」상 심의·의결기관인 탄소중립위원회를 중심으로 환경·에너지·산업 정책의 정합성을 높여 나가는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한국인의 에너지 인식: 탈원전과 재생에너지 아산정책연구원 「Issue BRIEF」 2020. 9. 21.

에너지 인식에 대한 조사 결과, 에너지원 선호도는 환경과 경제적 이유로 양분되어 있었다. 그러나 환경적으로 완전한 에너지원, 경제적으로 절대적 에너지원은 존재하지 않는다. (...) 경제적 이유로 선호되는 원자력도 사회적 수용성으로 인해 관련 비용이 증가하고 있다. 탈원전 정책 추진 후 경제적으로는 한전의 적자가 심화되고 전력비용이 증가하고 있다. (...) 이번 조사에 따르면, 환경을 고려하는 에너지 정책으로의 전환이 호응을 얻고 있는 가운데 원자력에 대한 지지도 일정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었다. 에너지 정책을 경제와 환경으로 양분해 한 방향으로 급격한 전환을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대신 각각의 에너지원에 대한 환경, 경제적 장단점 분석과 장기 에너지 수급 예측치에 기반한 보다 정교한 정책의 추진이 필요하다.

문재인 정부 에너지 전환 정책의 경로 고찰: 탈원전·탈석탄 공약을 중심으로

「한국정책과학학회보」 2021. 9. 30.

문재인 정부의 핵심적인 정책 기조 가운데 하나일 뿐만 아니라 탈원전·탈석탄이라는 슬로건으로 명확하게 제시되었던 에너지 전환이 임기 중에 달성되지 못했던 이유를 ‘경로 고착’이라는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외교·제도·조직·정치·산업·사회적 고착화라는 원인을 중심으로 설명이 이루어질 수 있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대통령의 높은 관심에도 불구하고 이들 여섯 가지 요인으로 인해 과거 정권에서 수립되었던 경로가 제대로 전환되지 못한 채, 정책 개혁이 한계에 부딪힌 것으로 확인되었다. 결론적으로 본 논문에서는 기후변화 시대에 한국 사회가 탈탄소 사회로 탈바꿈하기 위한 에너지 전환 정책의 고착화 탈피 전략 및 그린 뉴딜 관련 함의가 도출될 수 있었다.

[탈원전, 5년안에 해내야 할 이유](#) 미디어 오늘 2021. 9. 13.

원전은 기후위기대응에도 백해무익하다. IPCC 등 외국의 학자들은 기후위기에 집중해서 대응해야 하는 시기는 지금부터 8년인데, 핵발전소는 지금부터 건설한다 하더라도 12년이상 걸리는 존재이므로 쓸모가 없다는 것. 또 영국 서섹스대학은 재생가능에너지가 핵발전보다 훨씬 더 효과적이며, 핵에너지는 그리드(grid: 전력망) 안에서 더욱 골치 아픈 존재라는 지적을 하고 있다. 원전이 없어야 전력망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다는 것. (...) 또 최근 언론에서 회자되고 있는 소형원자로 SMR은 경제성 때문에 연구실 문밖을 나오지 못할 것이라는 예측이 지배적이다. (...) 이에 대해 전영환 홍대 전기공학과 교수도 동일한 지적을 하면서, 이를 극복하려면 한전이 독점하고 있는 전력시장을 개방해야 진정한 에너지전환이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에너지전환 로드맵 실현을 위한 지역·산업 관련 분야 법제 정비방안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19. 10. 31.

우리나라의 에너지전환 로드맵 또한 탈원전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이밖에도 에너지 믹스 최적화와 저효율 소비구조 개선, 에너지산업 육성 등을 포괄하는 에너지 전반의 혁신을 비롯하여 전력생산 과정에서 시민의 참여와 이익을 권장하는 ‘에너지의 민주화’도 에너지전환의 범위에 포함된다는 특징이 있다. (...) 원전의 단계적 감축이 단순히 선언에만 머물지 않고 에너지전환을 목표로 한 실질적인 가동 중지 폐쇄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원전 입지 지역과 원전 산업에 대한 현실적인 출구전략이나 보완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 원전 감축에 따른 지역 산업 관련 법제의 정비를 위해서는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을 개편하고 국가 에너지정책 방향에 맞도록 원자력의 지원금 단가를 낮추거나 신재생 단가를 높일 필요가 있다.

법무법인(유) 지평 공공정책팀 · (사)지평법정책연구소



이공현 명예대표변호사
(법정책연구소 이사장)
02-6200-1770
leekh@jipyong.com



임성택 대표변호사
02-6200-1746
stlim@jipyong.com



윤영규 변호사
02-6200-1743
ykyun@jipyong.com



김진권 변호사
02-6200-1812
jkkim@jipyong.com



민창욱 변호사
02-6200-1841
cwmin@jipyong.com



최정호 선임연구원
(지평법정책연구소)
02-6200-0628
jhc@jipyong.com

지평 공공정책팀 · 지평법정책연구소 입법정책브리핑의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간단한 설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구독자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설문조사 참여 링크](#)).